

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/4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시정의 주요정책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과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, 단순 회의참석 외 전문지식을 갖고 사전 안전을 검토해야 하는 설계자문위원회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위원들의 보다 충실한 시정자문 및 안전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현행 위원회 성격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참석수당(1회당 5만원, 3시간초과시 2만원 추가지급)만을 지급하던 것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 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제2항)

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“회의수당”을 “회의수당등”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 ☎ 940-4124
입안자	총 무 과 장	이 순 용
	시 정 담 당	김 규 범
	담 당 자	김 영 기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회의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 설)	제3조(회의수당등)①----- ----- -----, ②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